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충질문 서면질문 · 답변서

(나정숙·이형근 의원)

안 산 시 의 회

보충 시정질문(서면) 요약서

□ 요약 내용

의원	질문제목	비고
나정숙 (3)	1. 스마트 허브 유해화학물질 단속권이 경기도, 고용노동부 등에 있어 우리 시 단속은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안전권을 위한 지차제 자체의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2. 안산시 자체의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유해물질취급자에 대한 초기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대책, 안전장치 설치 작동시 화학사고 원인이 될 수있는 주요사항 집중 점검 대책은?	
	3. 화학물질 다량 사용하는 업체 특별 관리사항은 무엇인지?	
이형근 (1)	1.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 개선 방안 계획과 예산절감 방안 강구에 대하여?	

□ 보충 시정질문(서면) 내용

○ 이형근 의원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신원남 소장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민간위탁의 중요성만 강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성의를 가지고 질의한 내용중에,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또 다시 기존업체가 재선정되어, 탈락한 업체에서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법으로 까지 호소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위 사업장별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수하여, 공기업인 안산 도시공사로, 위. 수탁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고 질의했는데, 듣고자 하는 내용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내용이 없어서 다시 질의하오니,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 존경하는 나정숙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스마트 허브 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시민의 안전권을 위한 자체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 초기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대책, 화학사고 원인 주요사항 집중 점검대책은?
- 화학물질 다량 사용하는 업체 특별 관리사항은 무엇인지?

-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스마트 허브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업무 관리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1에 의거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그동안 스마트 허브지역 내 환경업무의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경업무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차례 건의한바 있으나 중앙(도)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마트 허브 환경업무 일원화에 대하여 건의하고, 시도·국회의원과도 협조하여 스마트 허브지역 내 환경업무 일원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는 지역 내 환경 현안사항인 스마트 허브지역 내 화학물질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와 유독물등록 업체현황 공유 및 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한 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두 번째, 초기 사고 대응 강화 및 화학사고 원인 주요사항 집중 점검대책에 대하여는, 초기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유독물 관리자에 대한 정기(법정) 교육을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필요시 우리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화학물질 사고대응 교육 및 현장 학습을 통하여 사고 대비를 강화 할 계획이며
- 화학사고 원인 주요사항 집중 점검대책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및 시설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사항을 경기도와 함께 확인하여 사고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상록경찰서에서 자체 개발하여 팔곡도금단지 협회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QR코드의 활용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면, 스마트 허브지역 내 유독물 취급업체에도 보급하여 사고예방 및 조기수습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화학물질 다량사용업체 특별관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다량사용업체는 유독물을 연간 5,000톤 이상 제조·사용하거나, 200톤 이상 보관·저장 시설이 있는 유독물취급 사업장으로 안산시에는 17개소가 있으며

- 경기도에서 이 업체들을 중점관리 순찰대상 사업장으로 관리하여 주2회 저장시설의 부식·손상·노후에 따른 외부 유출 여부 및 유독물 보관시설의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여 유독물 업체의 안전관리 의식 및 경각심 고취로 화학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형근 의원님께서
- 보충 질문하신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의 지방공기업 위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계약기간 종료후 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로 위탁에 대하여
- 안산시에서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로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위탁기간 도래 3개월 이전에 재 위탁에 따른 운영원가산정연구 용역을 하여 위탁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보다 안산도시공사에 위탁시 예산이 절감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탁 도래전에 위탁금액을 결정하는 운영원가산정연구 용역시 민간위탁과 안산도시공사 위탁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위탁방안으로 추진 하겠습니다.